

日本 漁港의 維持管理 ⑬

海岸保全地區의 유지관리

부 칙

「을」의 협정은 당해도로의 공용개시일부터 효력을 받으며 노선을 폐지한 경우 또는 호안의 공용을 폐지한 경우는 효력을 상실한다.

이상의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, 「갑」 「을」명기 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갖는다.

年 月 日

協定者

甲 海岸管理者

○○縣知事(또는 ○○市町村長) ○○○○인

乙 道路管理者 ○○縣(또는 ○○○市町村)

○○縣知事(또는 ○○市町村長) ○○○○인

添附圖面

詳細平面圖

標準斷面圖

주 ②

겸용 공작물 관리협정서(예) (어항관리자 간)

해안관리자 ○○현지사(또는 ○○시정촌장) ○○○○(이하 「갑」이라 한다)와 어항관리자 ○○현(또는 ○○시정촌)의 장 ○○현지사(또는 ○○시정촌장) ○○○○(이하 「을」이라 한다.)은 ○○어항 해안 보전구역내의 호안일부와 겸용하는 어항임항도로(○, ○○선) (이하 도로라 한다.)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, 본협정을 체결한다.

「이하 예~도로관리자 간, 제1조~제10조 동일」

부 칙

이 협정은 「을」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도로의 효력을 폐지한 경우 또는 호안의 공용을 폐지한 경우는 효력을 상실한다.

이상의 협정을 증명한 이 협정서 2통을 작성, 「갑」 「을」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을 갖는다.

年 月 日

甲 海岸管理者

○○縣知事(또는 ○○市町村長) ○○○○인

乙 漁港管理者 ○○縣(또는 ○○市町村長)

○○縣知事(또는 ○○市町村長) ○○○○인

添附圖面

**해안 호안 전면을 매립하여 조성한
어항 시설 용지 등의 어항시설과 외부와의
출입로(도로)로서 사용하기 위하여
해안 호안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도
명확한 목적의 사용에 해당한다.**

詳細平面圖
標準斷面圖

주 ③
각서

○○현지사 (또는 ○○시정
촌장) (해안관리자)와 (○○
현 또는 ○○시정촌) (도로·
어항관리자)의 장과 체결한
○○어항해안보전구역내의 호
안에 관한 겸용공작물 관리
협정의 실시에 있어서는 다음
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
다.

기(記)

1. 도로(어항)관리자는 겸
용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보강
함과 동시에 마모 및 손상한
경우는 부분적으로 콘크리트
로 바꾸거나 아스팔트로 더욱
보강하는 등 항상 해안보전상
지장이 없도록 양호한 상태로
유지 수선을 행하는 것으로
한다.

2. 1항에 있어서 해안관리

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는
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年 月 日

海岸管理者

○○縣知事(또는 ○○市町
村長) ○○○○인

道路(漁港) 管理者 ○○縣
(또는 ○○市町村)

○○縣知事(또는 ○○市町
村長) ○○○○인

③ 해안 호안 파반공(波返
工)의 일부를 제거한 어항시
설(어항시설용지를 포함)과
외부와의 출입로(도로)로 사
용하는 경우

해안호안전면을 매립하여
조성한 어항시설용지등의 어
항시설과 외부와의 출입로(도
로)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
안호안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
도 명확한 목적의 사용에 해
당한다.

(2) 시설의 처분

해안호안의 전면이 매립되

어 어항시설용지등의 어항시
설이 설치, 조성됨으로써 해
안보전시설로서 존치시킬 필
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
어항시설의 이용상 해안호안
의 상부를 철거하고 호안부를
어항시설용지의 일부로서 이
용하는 일이 있다.

이 경우 시설의 처분에 있어
서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정에
따라 처분의 승인을 필요로
하며 당해 시설의 부지인 공
공공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
법상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
의 용도를 폐지하고 보통재산
으로서 대장성에 인계하는 등
의 절차(전면이 매립됨으로써
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
인계가 부적합한 재산으로 된
다.)가 필요하다. ㉔